

# 이천시 장애인주간(단기)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

소관부서 : 노인장애인과

제정 1998·12·30 규칙 제145호  
개정 2001·3·7 규칙 제216호  
개정 2004·11·24 규칙 제287호  
일부개정 2014·9·12 규칙 제520호  
(이천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)  
일부개정 2015·12·31 규칙 제578호  
일부개정 2019·7·1 규칙 제655호  
(이천시 규칙 중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규칙 일괄정비규칙)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이천시 장애인주간(단기)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·12·31>

**제2조(업무)**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15·12·31>

1. 보호시설의 관리 및 운영
2. 장애인용 특수차량 운행
3. 입소자보호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
4. 그 밖에 보호장애인을 위한 각종 재활서비스

**제3조(운영요원 및 보수 등)**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운영요원(이하 “종사자”라 한다)은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42조의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에 따라 시설별 3명 이상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15·12·31>

② 삭제 <2015·12·31>

③ 종사자의 자격 및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(장애인복지시설) 종사자 자격기준 및 직원보수규정에 의한다. 다만, 운전원의 보수기준은 보조원과 같다. 다만, 보건복지부 보수지급기준과 복지부 개별시설 담당부서 기준 및 이천시 자체기준이 충돌할 경우 후자의 기준이 우선한다. <단서신설 2015·12·31>

④ 삭제 <2015·12·31>

**제4조(입소자선정 및 정원)**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을 입소시키고자 하는 자는

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소(이용)신청서를 시설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·12·31>

② 제1항에 따라 입소(이용)신청을 받은 시설 장은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자체 심의한 후 입소(이용)여부를 결정한다. <개정 2015·12·31>

1. 장애정도
2. 가족의 구성 및 경제력, 주거실태
3. 보호시설과의 거리 및 통원문제
4. 관내 거주기간

③ 보호시설에 입소(이용)하고자 하는 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우선한다. <개정 2001·3·7, 2015·12·31>

1.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저소득가정의 장애인
2. 타인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재가장애인

④ 보호시설의 정원은 시설별 최소 10명 이상으로 하되, 단기보호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5·12·31>

**제5조(이용시간등)** 보호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시설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. <개정 2004·11·24, 2015·12·31>

구분	1일 이용시간		비고
주간보호	평일	08:00 ~ 18:00	※ 단기보호는 휴일 없이 24시간 운영
	토요일, 공휴일	미운영	
단기보호	당일 09:00 ~ 익일 09:00		

**제6조(위탁운영신청 및 결정)** 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, 보호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와 관련 붙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·12·31>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

장애인복지사업에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자를 보호시설의 위탁운영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로 결정하고,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·12·31>

**제7조(계약 등)** ① 수탁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서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위탁계약 체결시 보호시설의 연간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·12·31>

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은 시장과 수탁자 간에 서면으로 체결하고, 계약서에는 위탁기간과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. <개정 2015·12·31>

**제7조의2(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)**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선정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·운영, 위원의 위촉 해제,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사항은 「이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제2조의2, 제2조의3 및 제2조의4를 따른다.

[본조신설 2015·12·31]

**제8조(위탁기간)** ①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2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<개정 2015·12·31>

② 계약기간 갱신 대상 수탁자는 계약만료기간 3개월 전에 시장에게 재수탁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·12·31>

**제9조(위탁의 취소)**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01·3·7, 2015·12·31>

1. 수탁자가 관계규정에 의한 위탁조건 및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
2. 수탁자가 공익상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
3.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행정기관 내부방침에 의하여 계속 위탁할 수 없는 경우
4. 수탁자가 과실 부주의 등으로 시장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

**제10조(대장 및 장부비치)** 수탁자는 보호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계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·12·31>

이천시 장애인주간(단기)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

1. 비품 및 소모품대장
2. 물품의 수불대장
3. 회계장부
4. 업무일지
5. 그 밖에 필요한 관계대장 및 서류

**제11조(준용규정)**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관계법령 및 지침을 준용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1·3·7 규칙 제216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4·11·24 규칙 제287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4·9·12 규칙 제520호, 이천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·12·31 규칙 제578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9·7·1 규칙 제655호, 이천시 규칙 중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규칙 일괄정비규칙>

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19. 7. 1>

입소(이용) 신청서(제4조제1항 관련)

장 애 인	성 명		생년월일		
	주 소				
	장애유형 및 정도		중복장애명		
보 호 자	성 명		생년월일		
	직 업	(직장명 : )			
	장애인과의 관계		전 화	직 장	
				자 택	
가정환경	주거상태	자가( ) 전세( ) 월세( ) 기타( )			
	생활구분	기초생활보장수급자( ) 차상위계층( ) 일 반( )			
	가 족 수	인	월 소 득	만원	
	통원거리	km( 분 소요)	통원방법		
기 타 참 고 사 항					
<p>「이천시 장애인주간(단기)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제4조제1항의                     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입소(이용)코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인 (인)</p> <p>시설장 귀하</p>					
첨부서류 1.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2. 수급자(차상위) 1부					



[별지 제3호서식] <개정 2014·9·12>

이천시 장애인주간(단기)보호시설 위탁운영결정통지서				
신 청 인	법인·단체명	(전화 :            )		
	대표자명		생년월일	
	주소			
시 설 물 개 요	시설명			
	소재지			
	규모	대지    m <sup>2</sup> , 건물    m <sup>2</sup>	수용정원	인
종 사 자	시설장성명		생년월일	
	직원현황			
위탁운영기간		년 월 일 ~    년 월 일 (    년간)		
<p>「이천시 장애인주간(단기)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제6조제2항의                     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의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   월    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이    천    시    장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귀하</p>				